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몸체부에 일체로 형성된 걸림편들과 M바(Bar)와의 결합시 프레임 연결이 매끄러우며, 견고하게 결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시공할 수 있는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를 제공함에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바(BAR)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구에 있어서, 소정의 길이를 갖고 그 단면이 대략 π 자형상을 한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아랫단부에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고, 길이 방향에 수직되게 제 1바를 결합하기 위한 제 1걸림편 및 상기 몸체부의 π 자형의 단부상에 일체로 형성되고, 제 2바를 결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 2걸림편을 포함한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도 1에서의 결합구와 바의 결합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도 1을 이용한 천정구조의 개략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장치는 천정(30)에 고정되도록 체결판(10)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합구에 M바(20,21,22)를 끼울 수 있도록 제 1걸림편(14)과 하나 이상의 제 2걸림편(16)이 몸체부(12)에 일체로 형성되어 구성된다.

이 제 2걸림편(16)은 몸체부(12)의 윗단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부(12)의 길이 방향에 수직되게 형성된다. 이러한, 몸체부(12)에 형성된 체결판(10)은 제 2걸림편(16)과는 반대방향으로 소정길이 연장되어 몸체부(12)와 일체된 장공(11)을 갖는다. 이 몸체부(12) 아랫단부에는 길이 방향에 수직되게 제 1바(22)를 결합할 수 있도록 제 1걸림편(14)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제 1걸림편(14)은 몸체부(12)와 일체이다. 이러한, 몸체부(12)는 단부가 π 자형으로 되어 있다. 이 몸체부(12)와 일체로 체결된 제 2걸림편(16)은 제 2바(21,20)를 결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 되어 있다. 즉, 몸체부(12)에 형성된 제 2걸림편(16)은 몸체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형성된다. 이러한, 몸체부(12)에 형성된 제 1걸림편(14)은 제 2바(20)의 측부하단면과 서로 수평을 이룬다. 이에, 결합구는 천정(30)에 고정되어 소정의 바(Bar)들과 결합되어 천정의 뼈대를 이룬다. 이렇게, 연결된 결합구와 M바(20,21,22)는 결합구의 몸체부(12)에 형성된 체결판(14, 16)들에 의해 공고히 결합되어져 천정(30)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즉, 체결판(14, 16)과 이에 맞물리는 M바(20,21,22)는 결합시 소정 깊이가 있는 사각공간의 책임부분을 매끄럽게 연결하여 공고히 결합 된다. 이러한, 결합구는 M바(20,21,22)와 결합하여 천정(30)에 뼈대를 이루게 된다. 이 뼈대 위에 천정판을 붙이므로써, 소정 깊이가 있는 사각공간을 갖는 천정을 만들 수 있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천정책임용 바 결합구에 관한 것으로, 천정 시공시 천정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이에 따른 자재를 연결 조립함에 있어서, 사각으로된 소정의 공간을 갖는 천정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매끄럽지 못한 책임을 보이는 종래에 비해,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를 사용하여 M바와의 연결하므로써, 천정의 시공시 짧은 시간내에 시공할 수 있으며 책임부분에 대한 마무리 또한, 매끄럽게 처리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바(BAR)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구에 있어서,
 소정의 길이를 갖고 그 단면이 대략 π 자형상을 한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아랫단부에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고, 길이 방향에 수직되게 제 1바를 결합하기 위한 제 1걸림편; 및
 상기 몸체부의 π 자형의 단부상에 일체로 형성되고, 제 2바를 결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 2걸림편을 포함하는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의 윗단부에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고, 몸체부의 길이 방향에 대략 수직되게 상기 제 2걸림편과는 반대방향으로 소정길이 연장되며 장공을 구비한 체결판을 더 포함하는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

청구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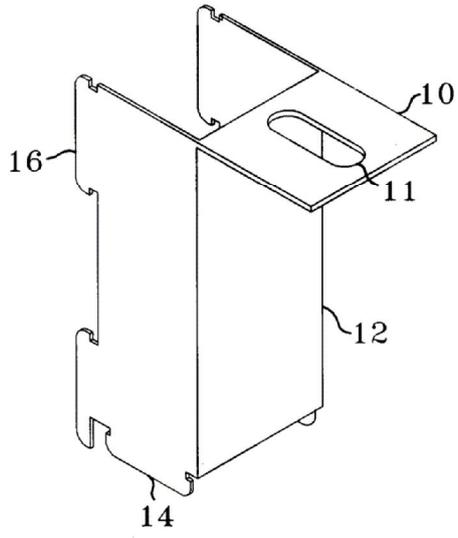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걸림편은 몸체부의 양단부에 각각 하나씩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

청구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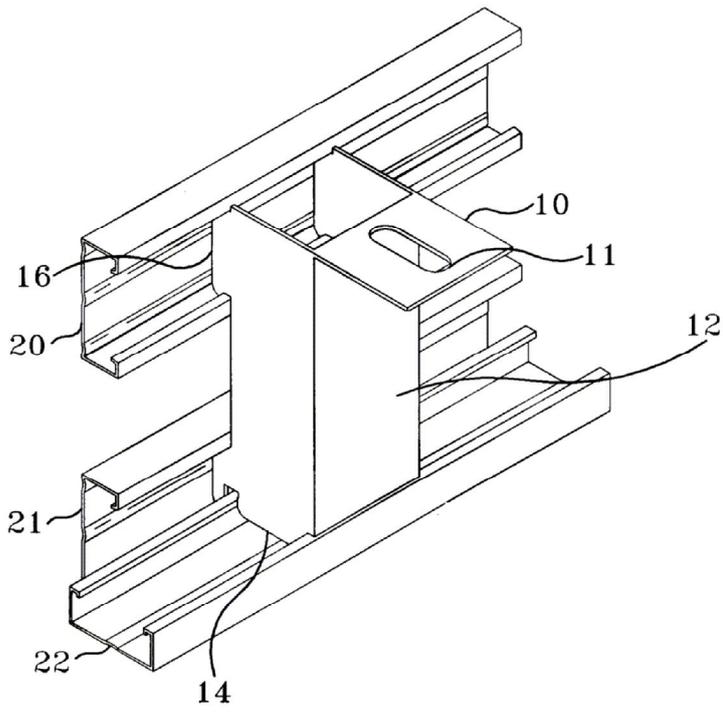
제 1항 내지 제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바와 제 2바가 각각 제 1걸림편 및 제 2바의 측부하단면이 서로 수평을 이루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책임천정용 바 결합구.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